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0가소 손해배상(기)
원 고	
	전주시
	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)
	(송달영수인 전종필)
피 고	
	전북
변 론 종 결	무변론
판 결 선 고	2021. 1. 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4 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9. .부터 2020. 10. 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판사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